

[별표 6의4]<신설 1986.6.19>

가족호텔업시설기준(제15조관련)

1. 객 실

가족단위 이용객의 숙박에 적합한 한식 또는 양식의 겸소한 시설을 갖추 것.

2. 현 관

총수용인원 1인당 0.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.

3. 부대시설

가. 식 당

가족단위 이용에 적합한 대중식당을 설치할 것.

나. 취사장

수용인원의 30%이상이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공용취사장 설비를 매층별로 설치할 것.

다. 매 점

식료품점이나 간이매점이 있을 것.

라. 운동시설

1식이상의 옥내운동시설과 2식이상의 옥외운동시설을 갖추 것.

4. 입지조건 및 건축구조

관광지 또는 국·도립공원과 기타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승지로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3층이하의 건물일 것.